

# 개방이사추천위원회규정

2019.10.23.제정    2020.07.01.일부개정    2023.11.13.일부개정

<미래전략팀>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「정관」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 제20조의5에 의거 개방이사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.

**제2조(기능)** 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개방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
2. 개방감사 추천에 관한 사항
3.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후보자에 대한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
4.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검증에 관한 사항

## 제2장 조직

**제3조(추천위원회 구성)** ①추천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
2.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
3.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

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각 구성단위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. (개정 2023.11.13.)

③ 추천위원회는 동명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.

**제3조의2(임기 및 추천)** ① 추천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만료시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각 구성단위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선임하여야 하며, 위원의 궐위시 각 구성단위에서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
③ 「대학평의원회규정」 제19조 제2항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의장 또는 부의장 변경시에는 자동으로 위원이 변경 추천된 것으로 본다.

[조 신설 2023.11.13.]

**제4조(위원장)** ①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며,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,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통할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.

### 제3장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추천

**제5조(개방이사 후보자 추천)** ① 「정관」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이사 추천을 의뢰받은 때에는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법인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.

② 개방이사 후보자는 「정관」 제20조의3의 자격을 갖춘 자로 각 구성단위별 협의를 거쳐 위원이 추천한다.

③ [별지서식]에 따라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 시 후보자의 학력, 현직 및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과 추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, 추천 시 필요한 서류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④ 추천위원회는 필요시 후보자에 대하여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**제6조(개방감사 후보자 추천)** 개방감사의 경우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, 개방감사 추천을 의뢰받은 때에는 대상인원의 1배수를 법인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.

**제7조(후보자 제한요건)**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개방이사, 개방감사로 추천될 수 없다.

1. 법령 또는 「정관」에 의하여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
2. 추천일 현재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 중인 자. 다만, 개방이사 또는 개방감사로 추천되어 재직 중인 자는 예외로 함
3. 현재 재직 중인 이사 또는 감사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

### 제4장 회의

**제8조(회의)**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
② 회의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을 교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,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. (신설 2020.7.1.)

**제9조(개회 및 의결)** ①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.

② 추천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추천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③ 추천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합의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.

**제10조(회의록)** ① 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.

③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이내에 대학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(신설 2020.7.1.)

**제11조(비밀유지)** 추천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는 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2조(간사)** ① 추천위원회의 독립성과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대학 평의원회 운영부서장의 추천으로 운영부서의 팀장을 간사로 위촉한다.

② 간사는 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한다.

**제13조(대우)** 추천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 제5장 보칙

**제14조(준용)**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사립학교법 및 동 시행령」,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「정관」 및 동명대학교 「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」을 준용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
[별지 제1호 서식] 추천서

 동명대학교	<h1 style="margin: 0;">추천서</h1>	
<input type="checkbox"/> 추천자 :		성명 :           (인)
<input type="checkbox"/> 피추천자 :	현직명 :	성명 :
<input type="checkbox"/> 추천직 :	( <input type="checkbox"/> 개방이사, <input type="checkbox"/> 개방감사 )	
<input type="checkbox"/> 추천사유		
<h2 style="margin: 0;">년 월 일</h2>		
<h3 style="margin: 0;">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이사장 귀하</h3>		

[별지 제2호 서식] 이력서(개정 2023.11.13.)



[별지 제3호 서식] 각서

 동명대학교	<h1 style="margin: 0;">서약서</h1>	
<input type="checkbox"/> 피추천자 :	현직명 :	성명 : (인)
<p>                     상기 본인은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의 <b>개방(이사, 감사)</b> 추천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21조 내지 제23조에                      서 규정한 임원선임의 제한,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임원                      의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.                 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                     년    월    일                 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 <b>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이사장 귀하</b> </p>		

[별지 제4호 서식] 추천동의서



동명대학교

## 개방(이사,감사) 추천동의서

피추천자 :

현직명 :

성명 :

(인)

상기 본인은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의 개방(이사, 감사)로 추천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이사장 귀하